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549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20.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20.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관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9. 6. 19.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각 '순번 ○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부동산 표시	순번 1	순번 2	순번 3	순번 4
경매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B	광주지방법원 C	광주지방법원 D	광주지방법원 E
낙찰일	2020. 7. 21.			
매각허가결정일	2020. 7. 28.			
매각대금 완납 및 취득세 신고일	2020. 8. 20.			
취득세 납부일	2020. 8. 24.			
소유권이전등기일	2020. 9. 3.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	광주지방법원 제163068호	광주지방법원 제163073호	광주지방법원 제163071호	광주지방법원 제163077호
관할구청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

나. 한편, 2020. 8. 12. 법률 제17437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된 지방세법'이라 한다),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주택취득시 취득세율은 주택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의 1 ~ 3%, 지방교육세율은 과세표준의 0.1 ~ 0.3%였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율은 12%, 지방교육세율은 0.4%로 각 상향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다. 원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각허가를 받았으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아니라 개정 전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0. 11. 23.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에게 순번 1, 2 부동산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에게 순번 3, 4 부동산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각 하였다.

라.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은 2020. 11. 26.경,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은 2020. 11. 27.경 각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에 의하면 2020. 7. 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일은 2020. 7. 21.이고, 매각허가결정일은 2020. 7. 28.이므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부칙 제1조 본문,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과 지방교육세율을 과도하게 상향하였고, 법률개정일이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대책발표를 한 2020. 7. 10.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위 규정들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부의 대책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한 경우와 법률 개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한 경우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1) 심사기준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법규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늘날에 있어서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하고,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농지를 중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 중과세하는 경우 그 정도는 어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당시 국가의 부동산 정책 및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심사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357,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207 결정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2)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주택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재화 중 하나로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간주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을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이 증가하였으며,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확대되었고[1], 주택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결국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주택 매수 증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하여, 기존에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주택가액에 따라 1 ~ 3%로 부과하던 것에서 일괄하여 12%의 고율로 책정하였는바,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보유를 우대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 가격의 안정과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거주가 아닌 거래나 임대차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에 대해 사실상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로 고율의 단일세율을 정하였고, 다만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정부가 2020. 7. 10. 부동산 대책(이하 '이 사건 대책'이라 한다) 발표를 통해 법인의 취득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기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비록 기존보다 고율이기는 하나 취득세율이 기존의 1 ~ 3%에서 12%로 상향조정되

1) 정부가 2020. 6. 17.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고 지방교육세율도 0.1 ~ 0.3%에서 0.4%로 상향된 사정만으로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막고 이를 통하여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이나 법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유되는 것을 막아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공익과 정부 정책 발표 후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개정된 취득세율 조항을 적용받음으로써 침해받게 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뢰보호의원칙 위배 여부

1) 부진정소급입법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취득세 부과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행위 대하여 개정조항을 소급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의 시행 후 과세요건이 충족된 행위에 대하여 개정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2) 조세영역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원칙

가)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과거에 시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법질서와 어느 정도의 마찰은 불가피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새로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바120 결정 등 참조).

다)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 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결정 등 참조).

3) 판단

가) 원고의 신뢰이익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적·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원고는 법률개정일이 아니라 정부가 이 사건 대책을 발표한 2020. 7. 10.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2020. 8. 12.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부는 2017. 8.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왔고, 2020. 6. 17.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함으로써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한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부동산 법인의 대출 규제 및 세제 강화(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의 법령개정을 예고했으며, 이후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 2020. 6. 17.자 대책을 보완하여 2020. 7. 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는바,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율을 12%로 일괄 상향 조치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변경 내용이 담겨 있었던 점, ② 이후 행정안전부는 2020. 7. 14. 보도자료를 통해 위 정부정책 발표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시 정부대책 발표일인 2020. 7. 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안내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고자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정부대책 발표일인 2020. 7. 10. 이후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계약체결 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던 점, ③ 이처럼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해왔고, 2020. 7. 10. 이전인 2020. 6. 17.경에도 원고와 같은 주택 보유 법인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정책 변화, 법률개정안이 발표된바 있었으므로, 법인의 주택 매매에 관하여 정책이 변경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고되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④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향후 업무와 직결되는 위와 같은 정책변경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하여 통상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하였던 점, ⑥ 그 밖에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세·재정정책의 탄력적·합리적 운용 필요성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의 신축적 변화 가능성, 조세의 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하면, 2020. 7. 10. 이 사건 대책 발표 이후 지방세법 개정 전의 주택 취득 건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원고의 기대는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공익적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시행일 당시까지 구법에 따른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면, 향후 부동산 정책발표시 오히려 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이용하여 정책의 취지와 반대되는 행위가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그 정책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 유예기간의 인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부동산 정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에 체결된 경우에는, 취득일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종전 취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대책 발표 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낙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경과규정에서 배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및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취득세율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였던 점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및 그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과규정의 기준일을 이 사건 대책 발표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상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이다. 즉,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오늘날 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 하에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 등을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 등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2. 24.자 2009헌바203, 2010헌바192, 20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판단

헌법은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2조에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입법자로서는 주택과 관련된 조세정책을 형성함에 있어 폭넓은 입법재량을 갖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거래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에 집중되는 것을 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음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정부는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안정을 위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대책을 발표하였고, 입법자는 이 사건 대책의 발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만 종전 지방세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공적 목적을 위해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인상하겠다고 공표한 이 사건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위 대책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적인 법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redacted]구 F아파트 G호

2. [redacted]구 H아파트 I호

3. [redacted]구 J아파트 K호

4. [redacted]구 L아파트 M호.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16

별지 2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제6조 19호 참조. 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부칙 <2020. 8. 12. 법률 제174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본d판결문은d판결서d인터넷열람d사이트에서d열람d출력되었습니다r
영리목적으로d이용하거나d무단d배포를d금합니다r게시일자d:d2020q07q06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끝.